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13년 1월 1일 「지방세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의 반영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용어변경(안 제14조 및 제15조)
-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대상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(안 제16조)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122조 및 제11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명칭을 개정하여, 사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,
- 안 제16조 중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대상 기준을 “5만원 이하”에서 “10만원 이하”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“과세특례”의 명칭을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바꾸고,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을 “5만원 이하”에서 “10만원 이하”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,

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